

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## 대리운전기사 특징

### 대리운전기사 정의

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

- **대리운전**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

### 주요 사고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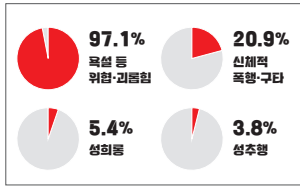
주로 타인 소유차량의 야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, 이용자 대부분이 취객인 특성상 대리운전비, 주차시비, 운전능력 등 이유로 이용자와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



교통사고



졸음·음주차량과 추돌



고객의 폭언·폭행 노출



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중 사고

### 업무 특성

- 1 반복되는 야간·심야 운전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.
- 2 근무장소가 일정치 않다.
- 3 이용자(고객)와의 마찰, 폭언 및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쉽다.
- 4 장소 이동 간「원동기장치자전거」인 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(PM, Personal Mobility)을 많이 사용한다.
- 5 다른 직종의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.



## 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타인 차량  
운행

작업  
내용

주로 도로 주변에서 콜(Call)을 기다리며 대기하거나, 콜을 받은 후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다양한 차종의 타인 소유차량과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

유해  
위험  
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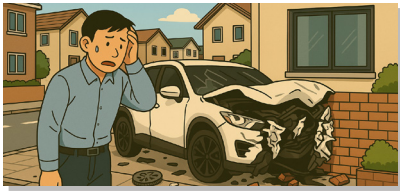
- 주로 야간 또는 심야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
- 고객(취객 등)의 폭언·폭행 등에 노출
- 도로 주변 장시간 근무에 따른 매연 노출
- 휴대폰 화면 장시간 응시, 야간 운행에 따른 시력 저하
- 심야시간 등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장애
- 직무스트레스,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해



## 주요 재해사례



### 부딪힘



운전부주의로 주력 외벽을 들이받음

### 예방 대책



- 운전 시 교통법규 준수
- 안전거리 확보
- 무리한 주행 금지
- 차로변경 주의 및 양보 운전
- 승차 시 좌석안전띠 착용



### 감정 노동



대리운전비 시비로 고객(취객)으로부터 폭언·폭행

### 예방 대책



#### · 대응지침 제공

- ✓ 폭언/폭행 등의 피해 신고절차 등 대응 요령
- ✓ 갈등(불만) 사전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응대업무 매뉴얼
- ✓ 불만을 제시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응 요령
- ✓ 피해 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방안
- ✓ 적절한 휴식방법 등



### 넘어짐



전동킥보드 타고 이동 중 넘어짐

### 예방 대책



- 승차용 안전모,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
-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
-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금지
- 승차정원 외 탑승 금지



## 사랑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### ☀ 대리운전 기사

- ✓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.(과속, 난폭운전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안전거리 미확보 등)
- ✓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급하게,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다.
- ✓ 신호가 바뀌었다고 급하게 출발하지 말고,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주행하지 않는다.  
(교차로 통행 전 좌·우 확인하고 방향지시등 켜기)
- ✓ 차량 승차 시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.
- ✓ 운전 중 잡담, 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### ☀ 대리운전업자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

- ✓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- ✓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
- ✓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
- ✓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고객 등 제3자의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

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, 휴게시간의 연장,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, 관할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,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

###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6항